## ○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-184호

「퇴직연금감독규정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> 2022년 5월 17일 금융위원회

# 「퇴직연금감독규정」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확정기여형(DC)·개인형(IRP)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(이하 "디폴트옵션")를 도입한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개정안이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가. 디폴트옵션 상품 100% 편입 허용(안 제12조)

퇴직연금 적립금의 100%(전액)까지 편입 가능한 운용방법에 디폴트 옵션을 추가함 나. 증권금융회사 예탁금도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입될 수 있는 기준 마련 (안 제8조, 제9조)

퇴직연금 가입자 노후자금 보호, 여타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금융기관 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, 증권금융회사도 유사한 수준의 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을 규정함

#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(참조: 자산운용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다. 보내실 곳 : 금융위원회(자산운용과)

○ 주소: (03171)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

ㅇ 전화 : 02-2100-2661

○ 팩스: 02-2100-2679

ㅇ 이메일 : asset1234@korea.kr

※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www.fsc.go.kr/지식마당/법령 정보/입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